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68 2020년 9월 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3. 황인구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0. 9. 3.

다.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년 9월 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남북교류협력 시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와의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견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제37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아래 민족 화해 및 공동번영 달성과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바 있음.
- 4. 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현재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정부는 '21년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약 63.2% 증액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37억원 (3.1%) 늘어난 1조 2433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속에 관련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입법예고 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 지방 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 2018년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서울-평양 도시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19년 250억 원, '20년 80억원 증액)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 ('18, 11, 1) 하였음.

<표-1>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수입액	지출액	연도말 조성액	연도	수입액	지출액	연도말 조성액
~'10년	24,014	6,492	17,522	'16년	348	682	19,171
'11년	706	1	18,227	'17년	317	1,946	17,542
'12년	723	237	18,713	'18년	442	3,783	14,201
'13년	579	183	19,109	'19년	25,505	7,315	32,391
'14년	513	212	19,410	'20년	9,107	4,793	36,705
'15년	429	334	19,505	계	62,683	25,978	36,705

- 현재 서울시는 북측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3국을 활용한 체육·역사 교류, 서울-평양 연계 관광,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대동강 수질개선 등 교류협력을 준비(붙임. 1) 중에 있으며,
-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보건의료, 인도지원, 감염병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안번호: 1868)은 기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1) 연장의 건이 코로나19로 인한 제297회 임시회 철회로 본회의 의결이 불가한 바, 불가피하게 특별위원회 재구성을 하기 위한 의안으로 제출되었음('20.09.04).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²)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함(운영전문위원실-2338).

¹⁾ 활동기간: 2020.03.06.~ 09.05

²⁾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6. 토론요지 : 생략
- 7. 심 사 결 과 : 원안 기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 부대이견 : 본 특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정함.

-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비호 1868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3일

발 의 자:황인구, 김경우, 이태성,

이호대, 김생환, 이병도,

이영실, 김평남, 김종무.

신정호, 정재웅, 정지권,

권수정 의원 (13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지방정부 중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남북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 제안이유

○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와의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견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지난 2019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남북은 판문점에서 4·12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 그러나 최근에는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북교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서울도시 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특별공연 등을 지원하며 남북 교류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는 남북 상호 신뢰구축, 화해분위기 조성 및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실현하고, 전쟁 및 단절이 빚은 남북의 이질적 체제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남북교류가 전개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서울-평양간 관광루트 개척, 스포츠기반의 교류협력,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역사유적 공동 발굴 등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여건구축과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민족 화해 및 공동번영 달성과 남북교류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0.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